

정책브리핑



정책브리핑 | 2022-28호 | 2022년 10월 11일 | 발행처 민주연구원 | 발행인 노웅래 | idp.theminjoo.kr

반지하 근절? 주민 내몰지 말고, 더불어 사는 기본주택 추진해야

박 동 욱 연구위원(도시사회공학 박사)

《 요약 》

■ 반지하 참변 발생 후, 정부와 서울시 반지하 대책과 근절을 발표

- 올 여름 폭우로 인한 재해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여러 국민이 숨지는 참변 발생
- 이에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대책과 근절을 발표

■ 반지하 주거 관련 현황 및 정책의 문제점

- 반지하 주거는 현재 서울시에서만 전체 가구의 5%가 살고 있는 주거형태인데, 이에 대해 개선이 아닌 근절을 우선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 추진임
- 반지하 포함 주거취약계층에 여전히 빈약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, 공공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공급의 지연, 이에 더해 주거복지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
- 도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까지 매각하려는 현 정부의 공공성 결여

■ 반지하 포함 주거정책을 위한 제언

- 최저주거기준 현실화·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·아동주거 급여를 포함하여 최소주거보장법 등 관련 제도 신설, 기존 주요 정책인 공공임대주택 확대
- 유도주거기준 구체화를 통한 최소주거기준 상향 등 반지하 관련 주거복지 제도 강화
- 반지하 포함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무주택 국민 누구나 입주 가능한 기본주택 추진

▶ 키워드: 반지하, 근절, 공공성, 주거복지, 기본주택

♣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,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
**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은 반지하를 포함한 열악한 주거환경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주거환경개선 관련 연구 및 정책 제안을 하였으며, 여전히 진행되는 주거환경 문제에 아직도 같은 현황 분석과 대안을 둘 수밖에 없어 일부 내용이 겹칠 수 있음을 밝힘 (참고: 반지하 주거개선 방안검토, 박동욱, 경제이슈분석 2015-11, <https://idp.theminjoo.kr/board/view/archive/1054?page=26>)

1. 반지하 참사 발생 후, 정부와 서울시의 근절대책 발표

○ 폭우로 인한 반지하 참사 발생

- 2022년 8월 8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해로 인해 서울시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4명 중 3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, 윤석열 대통령은 폭우가 쏟아지는 비상상황에 귀가 후 전화 지시로 대응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음
- 8월 9일 대통령 현장방문에서 참사를 당한 일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할머니께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, 이번 정부의 예산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대폭 5.6조 원이나 삭감함

○ 국토부의 말뿐인 근본대책 지시, 서울시의 비현실적인 안전대책

-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폭우로 50대 여성이 사망한 서울시 상도동 반지하방 현장에서 취약계층 안전강화를 발표하였으나, 안전취약 가구에 대해 사전 위기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아쉬움만 표하는 발언 외 실질적인 대책 내용이 없었음
 -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(2022년 9월), 공공주택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(2022년 12월), (假)도심 복합개발법 제정(2022년 12월) 등 정책 발표도 향후 추진 일정만 논의
- 서울시는 8월 10일 “지하·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”에서 반지하 주택 일몰제 추진을 결정하였으나, 반지하 가구의 지상으로 거쳐 이전 시 2년 간 월 20만 원 지원 등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음
 - 또한 최근 10월 5일 서울시는 3분의 2 이상 땅에 묻혀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를 먼저 선별 '주택 상태 조사'와 '거주자 특성 조사'를 구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책을 마련한다 했지만,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비판할 수 있음
 - ① 3분의 2 이상 땅에 묻힌 주택은 반지하가 아닌 지하 주택으로 정의
 - ② 재난 취약성은 주택 구조가 아닌 입지 영향이 훨씬 큼
 - ③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여러 지역이 1만호 이상 반지하 가구가 있다는 점에서, 지역이 아닌 특정 계층에 대한 협소한 실태조사는 전형적인 전시 행정임
- 서울시에서만 <표 1>처럼 전체 가구의 5% 수준인 약 20만 호(2020년 기준)가 반지하에 거주하는 상황에서, 이들을 위한 양호한 거쳐 마련까지 상당한 진통 예상

<표 1> 서울시 유형별 주택현황

가구유형	전체	지상	(반)지하	옥상
가구 수	3,982,290	3,750,423	200,849	31,018

(출처: 2020년 통계청)

2. 반지하 주거의 현황

○ 반지하 주거는 계층적으로는 저소득·청년세대 문제,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문제임

- <표 2>처럼 반지하 가구는 서울 4.4%, 경기 1.5%, 인천 1.7% 등 수도권에 집중하여 있으며, 이에 반지하 문제는 서울시 중심의 수도권 주거문제라고 할 수 있음 (전국 평균 1.4%)

<표 2> 반지하 포함 열악한 주거형태의 분포

	계	지상	반지하	지하	옥상
전국	100.0	98.4	1.4	0.2	0.1
서울	100.0	94.8	4.4	0.6	0.2
경기	100.0	98.2	1.5	0.3	0.0
인천	100.0	98.2	1.7	0.0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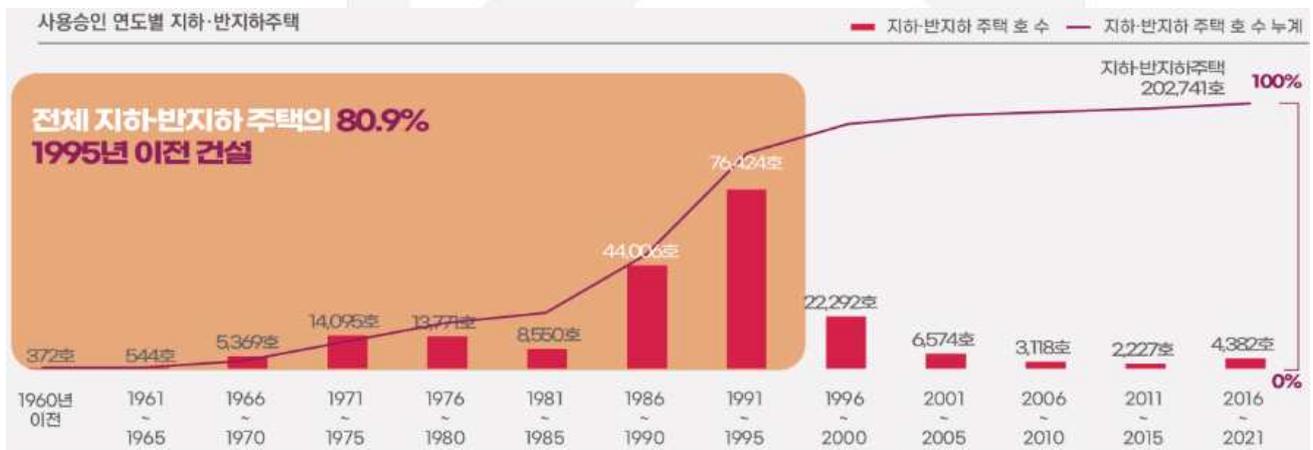
(출처: 2020년 주거실태조사, 단위: %)

- 2020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, 반지하 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5.9%, 청년가구 1.7% 등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함

○ 지난 20여 년간 거의 생성되지 않은 반지하 주택²⁾

- 서울시 반지하 주택은 2021년 말 기준 20.3만 호로 추정, 서울시 전체 가구 5%에 이룸
 - 주택 유형으로는 다가구주택 39.6%, 단독주택 36.3%, 다세대주택 20.8%로, 아파트 외 주택유형에서 비슷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음
- 이번 서울시의 대책 발표는 이미 20년 전에 대부분 만들어진 반지하 주거를 근절하겠다고 하는 실효성 낮은 대책이라 할 수 있음
 - 아래 <그림 1>을 보면, 서울시 전체 반지하 주택의 80%이상 1995년 이전, 90%이상 2000년 이전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음

<그림 1> 서울시 사용승인 연도별 반지하주택(지하포함)



(출처: 서울인포그래픽스, 서울연구원, 2022.09.13.)

2) <표 2>처럼 반지하는 지하에 비해 월등히 많아, 본고에서 (반)지하는 지하를 포함하여 지칭함을 알림

○ 여전히 반지하 가구가 집중된 서울시 일부 지역

- 아래 <표 3>를 보면 반지하 주거가 최근 10여 년간 많이 줄어졌지만, 그럼에도 여전히 서울시 내 자치구별로 일만 호 이상 가구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음
- 예전과 같이 이번에도 관악구 등 반지하가 집중된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던 것처럼, 특정한 입지에 집중하여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정책 추진이 필요함

<표 3> 서울시 내 반지하 주거가구 최다 자치구

반지하 가구		2021년	2010년
1	서울 관악구	16,265	25,096
2	서울 강북구	14,121	15,572
3	서울 중랑구	12,793	22,881

(출처: 2021년 서울연구원 연구자료,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, 단위: 호)

○ 반지하 주거가 아직 적지 않게 분포된 이유는 60-70년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주택 부족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다세대·다가구 주택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임

- 반지하란 주택의 위치 상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/2 미만인 경우를 정의함 (1/2 이상인 경우는 지하층으로 정의)
 -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반지하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가 집계됨
- 반지하 주거형식은 다세대거주 단독주택이 등장한 이후 일반 주거지역에 나타남
 - 다세대거주 단독주택은 한가구가 거주하는 독립된 주택유형인 단독주택에 임대차 관계에 의해 2가구 이상이 집주인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형태를 뜻하며, 이는 심각한 주택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자생적으로 대응한 형태임
- 반지하 주거는 끊임없는 주거환경 악화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기존 다세대거주 단독주택이 수행하였던 소형 임대주택 공급 기능을 확장하고자 마련,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새로운 유형 도입이었음³⁾
 - 1984년 건축법 개정으로 이전 천정고 2/3에서 1/2 이상으로 지하층 기준이 완화되어 지하를 덜 파고도 개발과 분양하는 것이 가능, 1990년도 이후 반지하 개발의 확대 이유는 지하층이 층수에 포함되지 않아 층수 제한에 자유로워졌다는 것임
 - 1990년도 이전에는 다세대와 다가구 모두 3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되었는데, 그 이후 4층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으며, 지하층까지 건설할 경우 모두 5층까지 건설하여 분양과 임대를 할 수 있었기에 수익성 측면에서 지하층이 선호되었음

3) 다세대는 공공주택으로 실내 모든 부대공간이 확보된 소규모 주택이며,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임차가구에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해주는 주택임. 1주택1가구 규제가 오히려 불법 개조를 유도하는 등 서민주거 환경을 악화시켜,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서민주거 양식을 만들면 공공재정측면에서도 유리하고 각 가구도 거주비용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새로운 주택유형을 도입한 것임

3. 반지하 주거의 문제, 그리고 현재 발표된 정책의 문제점

- 일반적으로 반지하 주거는 일조·환기·습기에 관련한 환경적인 열악함으로 발생하는 실내오염이 거주민 건강문제를 위협하고 있으며, 특히 장마 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위험이 존재함
 - 반지하 주거의 환경 특성상 지상에 비하여 이동 공기량이 적고 벽면온도가 낮으며 결로 발생이 쉬워, 거주에 열악한 공간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
 - ① 단열: 반지하 주거공간의 열부하는 이론적으로 지상의 10-20%로 일정온도 유지에는 용이하나, 결로 발생이 쉬움
 - ② 차광: 반지하 주거공간은 태양광선으로부터 차단되어있어 최대한 자연채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하며, 인공조명 설비가 필요함
 - ③ 공기정제: 반지하 주거공간은 공기의 이동이 매우 적어 환기문제가 있어 적절한 환기설비가 요구되나, 이는 동절기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됨
 - ④ 결로: 환기가 부족하면 실내공기 정체가 쉽고 습도를 증가시켜, 세균과 곰팡이 등이 쉽게 성장하여 질병과 알레르기의 원인이 됨
 - ⑤ 방범취약: 절도 및 강도 같은 범죄와 노출 및 엿보기 등의 문제점도 있음
 - 영화 기생충에서 나온 것처럼 배수가 원활치 않아 화장실이 높게 설치된 경우도 있으며, 일반적으로 다수 반지하 가구가 심각한 누수 및 곰팡이 문제를 호소함
 -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저렴한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, 임대인에게 개보수 요구가 어려움
- (서울시)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, 반지하주택 금지 및 월 20만 원 주거지원
 - 현 서울시 대책은 오세훈 시장의 전시행정이라는 강한 비판이 가능
 - 비판 내용은 주로 ① 20만 원 지원으로 지상에 갈 주택이 없고, ② 2년 후 지원 중단 후 무대책이며, ③ 반지하 임차인과 임대인은 모두 재산에 침해를 당하는 상황 발생
 - 현 반지하 거주자 입장에서 서울시처럼 비정하게 갈 곳 마련 없이 반지하 주거지를 근절한다고 하면,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성이 없는 국민은 갈 곳이 없음
- 반지하의 또 다른 문제점은 열악·고립·빈곤·위험 등 부정적인 사회 인식으로 거주자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손상되는 점을 들 수 있는데, 이러한 점을 간과하는 정책 추진은 잘 못된 것임
 - 지상 거주에 비해 나은 점으로 세입자 가구의 독립성과 사생활 보장이 있지만, 실제 반지하의 공간적 배치로 인해 고립과 비가시화로 인한 단점이 큼
 - 하지만 반지하 거주자들은 예상과 달리 이사를 할 경우에도 기존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주한다는 경향이 나타남

- 최초 반지하 거주민들은 주거비 절감으로 반지하를 선택하였으나, 이후 그들은 이로 인해 기존에 구축된 입지와 관계망이 중요해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향이 높음
- 반지하 거주자들이 향후 기존 반지하에서 다른 형태의 거주지로 이동하여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, 이사 전후 정착이 어렵지 않도록 주거 정책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

○ (중앙정부) 서민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축소 예정, 더욱이 이번 재해피해 등으로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주거상향 관련예산을 대폭 삭감

- 윤석열 정부는 공약에서부터 공공임대주택 부문이 연 평균 10만 가구로 기존에 비해 대폭 축소하였으며, 서민주거에 대한 정책지원이 약한 측면이 있었음
 - 공공임대주택, 박근혜 11만 -> 문재인 14만(이재명 16만 공약) vs 윤석열 10만 공약
- 윤석열 대통령은 8월 9일 반지하 참사 현장에서 재해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으나, 막상 8월 30일 발표한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반지하·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예산은 5조 6445억 원(25.1%) 삭감
 - (전년) 22조 5281억 원 -> (올해) 16조 8836억 원

<그림 2> 공공임대주택 관련 주요 예산 전년대비 변화⁴⁾



○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이 확대 가능한 국유재산 매각 추진 등 서민주거 강화에 반하는 정책을 진행

-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대책으로 제시된 공공임대주택은 비싼 지가로 도심에 짓지 못하고 외곽에 지어 공실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었음
- 하지만 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강남구의 여러 빌딩과 주택은 공공을 위해 개발하지 않고 매각하겠다는 결정을 하여 매우 모순적인 양태를 보인다 할 수 있음⁵⁾

4) 한겨레 보도자료 인용('반지하 비극' 얼마나 됐다고...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6천억원 무더기 삭감, 2022. 8. 30.)

5)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공공주택·생활SOC·도시재생 등 공공성 높은 사업에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였으며, 2020년 8월4일 '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'에서 국유지를 활용하여 도시를 포함한 신규 택지공급으로 약 2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

○ **윤석열 정부의 자신만만했던 주택공급 계획 지연, 국민 주거 안정도 함께 지연**

-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건축을 활성화 하겠다는 약속(2022. 1. 6.)을 하였고, 안철수 의원도 인수위원장 시기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차질 없는 추진을 발언(2022. 4. 27.)
- 하지만 8월16일 주택공급대책에서도 1기신도시 관련 2024년까지 종합계획을 세우겠다는 발표만으로 공약 파기 및 국민 주거 안정을 지연, 야당의 협조가 매우 높게 기대되는 부문에서 정부와 여당이 의지가 약하다 비판할 수밖에 없음
 -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대선 공약으로 재개발·재건축 활성화 및 서울권 신규주택 공급과 저렴한 원가형 주택공급을 약속하였으며, 국민 전체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에는 국민의힘보다 더욱 큰 311만 호로 이미 의지를 보인 바 있음

4. 반지하를 포함한 바람직한 주거정책을 위한 제언

○ **최소주거보장법 등 제도 신설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로,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조성**

- 2022년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최소주거보장법 등 제도 신설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충하여,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들에게 국가 지원을 명시
 - ①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인 최저주거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여, 사회적·경제적 여건 변화가 반영 되도록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
 - ② 2022년 현재 주거급여 수급권자 기준은 중위소득의 46% 이하, 2023년에는 중위소득의 47% 이하로 적용될 예정이나, 안정적인 주거 보장과 주거수준 향상 도모하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60% 수준으로 상향
 - ③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아동 주거급여(또는 바우처)가 보편적인 상황임을 감안하여,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아동·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선정기준 등 특별하게 우대 적용
-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거복지 관련 예산을 다시 확충하여, 윤석열 대통령이 반지하 참사 현장에서 재해민을 위해 마련하라 지시한 공공임대주택 규모를 확대해야 함

○ **주거기본법의 유도주거기준을 보다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최소주거기준의 상향을 꾀하는 등 반지하 관련 여러 제도를 강화**⁷⁾

- 반지하는 건축법, 주택법, 주거기본법, 주거급여법,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

6) 주거기본법과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(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)을 참고하여 작성

7) pp.9-10 <참고> 반지하 관련 제도에서 언급한 것처럼, 반지하 주거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법률이 연계되어 있음

법률 등 여러 제도가 물리·복지·공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계되어 있어, 복합적으로 반지하 주거 개선을 추진해야 함

- 하지만 우선적으로 주거복지 측면에서 연계성이 높은 최저주거기준 상향을 위해, 선언적인 유도주거기준을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
- 앞으로도 지옥고로 대표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있다는 현실을 인지하고, 주거복지 관련 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함

○ 향후 기본주택 추진으로,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국민 주거안정 강화

-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서민·중산층 포함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양질의 기본주택 제시
 - 대형 평수를 포함한 (임대형)기본주택으로, 무주택자 누구나 가구 상황에 맞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기본권 강화
 - 누구나집형·지분적립형·이익공유형 등 (분양형) 기본주택으로, 내 집 마련에 선택의 폭 확대
-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동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, 주거정책 전반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공성 강화

<참고> 반지하 관련 제도

□ 반지하 주거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은 아직 없지만, 관련법을 열거하면 건축법, 주택법, 주거기본법, 주거급여법,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, 지하생활 공간 공기질 관리법 등이 있음

① '건축법'은 지하층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에 물리적인 측면에서 반지하와 연관성이 높음

- '건축법' 내 지하층 관련조항의 개정 흐름을 보면, 전쟁대비 용으로 설치된 지하층이 주택부족 상황에서 주거로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, 지하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로 인해 확산된 것임
<1962년> '건축법' 제정 당시에는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천정높이의 1/3 이상인 층으로 정의하며, 주택의 거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음
<1970년> 지하층의 정의가 바닥에서 천정 높이의 1/3에서 2/3로 변경하는 건축법 개정이 있었으며, 당시 냉전 상황에서 전쟁 발생 시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의 지하층 설치를 의무규정으로 신설함
<1975년> 주택의 거실을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건축법 조항이 개정되었고, 이에 '반지하' 주거의 인정으로 해석되어 급격한 확산을 가져오게 됨
<1984년> 지하층에 대한 규정이 기존 바닥에서 천정 높이의 2/3에서 1/2로 개정되었음. 이는 당시 주거 난과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대적 상황에서 지하주거환경의 개선노력이었으나, 이미 확산되었던 지하주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일반 주택의 지하층 설치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계기가 됨
<2001년 이후> 다세대 주택 신축 시 1층을 필로티로 하는 경우가 많아져 반지하 주거의 공급이 대폭 축소 되어, 현재까지 약 20년간 공급이 저조한 상황임

② '주택법'은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주거복지차원에서 반지하와 연관성이 높음

- 기존 주택정책의 중심을 물량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이전함에 있어 주택보급률 외에 새로운 정책지표의 설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, 2003년 7월 법 개정과 함께, 최저주거기준에 대해 법제화가 이루어짐
- 최저주거기준은 가족 구성원에 따른 방의 구성과 주거면적의 조합, 주택의 질적 측면으로 구조, 성능, 환경기준 등을 설정하고 있지만,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정책중점대상으로 삼는다는 선언적인 내용만 명시하였고 각 광역지자체의 파악정도와 지원기준도 각기 다름
- 주거복지정책의 수립·평가·집행과정에서 적용되는 '최저주거기준' 구체성 부족이 큰 단점으로 지적 되었으나, 2020년 3월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 2.0에서 반지하·노후고시원·쪽방 가구를 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로 지정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대상으로 지정

③ '주거기본법'은 기존 주택법의 주거복지부문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, 최저주거기준을 구체화하고, 이에 추가하여 유도주거기준을 신설하여 주거수준 향상을 꾀함

- '주거기본법'은 2015년 6월에 제정, 국민의 주거안정과 더불어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임
-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주거복지센터의 설립,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및 주거급여 지급, 유도주거 기준의 신설이 핵심 사항 (유도주거기준 신설로 국민 주거수준 향상 유도)

- ④ '주거급여법'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, 최저생활과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, 기존 기초생활보장법 상 지원되었던 급여 중에서 주거급여를 구체화하였다고 보면 됨
 - 2015년 1월에 시행되어, 적지 않은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음
 - 현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%(2022년 4인 기준 235만 원)이하 가구가 대상이지만, 향후 현실에 맞춰 소득인정액을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높음
 - 이와 더불어,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수 국가에서 시행중인 아동관련 주거급여(또는 바우처)도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음

- ⑤ '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'
 -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, 출입문 폭손잡이·마감재 등 각종 설비의 기준을 제시하며 필요한 사항을 정함

- ⑥ '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'
 -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은 현재 지하와 관련한 공간환경을 다루고 있는 유일한 법으로,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역사·지하도상가 등 지하시설의 생활공간을 대상으로 함